#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7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이건태·박지혜·민형배

민병덕 • 양문석 • 김재원

김성환 · 강유정 · 김기표

황정아 · 권칠승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 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 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 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징계 등의 시효"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기간이"를 "징계 등의 시효가"로, "제1항의 기간은"을 "징계 등의 시효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부과 사유의 시효) ① -----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 ----기간(이하 이 조 지 못한다. 에서 "징계 등의 시효"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 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징계 등의 시효가-----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 -----<u>징계</u> 등의 시효 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 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 <신 설>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 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

	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
	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